

『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3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3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3일

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인 기

나. 제안이유

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변경 및 주민 불편·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
- 피해보상 대상을 농작물에서 농작물, 산림작물, 수산양식물로 확대 및 제명변경 (제명변경 및 안 제3조)
- 피해액 산정 기준과 피해보상 절차 명확화(안 제5조,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규제심사 이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□ 본 「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,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변경 및 주민 불편·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
- 정의(안 제2조)
- 피해보상 대상자(안 제3조)
- 피해보상 요건 및 산정기준, 피해보상액 산정(안 제4조~제6조)
- 피해신고 및 조사, 피해보상 절차를 명확히 함(안 제7조, 제8조)
-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비(안 제9조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상위법인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및 주민 불편·부담 완화 등의 규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,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관한 보상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